

# 서울 행정 법 원

## 제 1 1 부

### 판 결

사 건 2015구합5856 월성1호기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변 론 종 결 2017. 1. 4.

판 결 선 고 2017. 2. 7.

### 주 문

1.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2015. 2. 27.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첨 '8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2. 27.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라 한다) 인근의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위 지역 밖의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2)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운영변경허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이하 'KINS'라 한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

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운영변경허가 등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나. 월성1호기의 개요

월성1호기는 1977. 5. 3.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1978. 2. 15.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2. 11. 21. 최초 임계에 도달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1983. 4. 22.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월성1호기를 비롯하여 월성2, 3, 4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sup>1)</sup> 원전의 일종인 캔두(CANDU)형 원자력발전소이다.

#### 다. 운영변경허가의 신청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12. 11. 20.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에 관하여, 2009. 12. 30. 구 원자력법 [2011. 7. 25.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0911호) 제정으로 폐지] 제21조 제1항, 구 원자력법 시행령[2011. 10. 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48호) 제정으로 폐지] 제34조 제1항<sup>2)</sup>을 근거로 당시 허가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월성1호기를 계속하여 운전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갑 제9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라. 안전성 심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1. 4. KINS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의뢰하였다(을 제25호증). KINS는 2014.

1) 냉각재와 감속재로 중수(Heavy Water)를 사용하고, 냉각재인 중수는 고온에 끓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용한다.

2) 허가권자가 피고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과 같다.

10. 2.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류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심사를 통해,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4개 평가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안전관련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심사 결론이 기재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다(갑 제22호증).

#### 마.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피고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15. 1. 15. 및 2015. 2. 12. 2번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이하 '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2015. 2. 26. 제35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김○○, 김◎◎ 위원은 표결 직전에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하였다)으로 '월성1호기에 대하여 2022. 11. 20.까지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2, 16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 바.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2. 27. 한수원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기술에 적합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 16, 22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한수원에 대하여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한편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

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구 원자력안전법(2015. 1. 20.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자력안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sup>3)</sup>, 이하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라 하고,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47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설계수명 내에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2015. 7. 21. 총리령 제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허가 이후 부지특성의 변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2014. 11. 19.) 제2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4. 11. 22. 이전인 2012. 11. 20.에 제36조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월성1호기에 대하여는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가 적용된다.

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에 따른 구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별표2]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지역의 축산물의 생산현황, 해양이용 현황, 수산물의 생산과 수상 활동 현황, 주요 어항, 해수욕장, 양식장, 어장, 이동거리, 거주민의 활동시간, 총인구 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집단에 대하여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근거 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전의 건설, 운영 및 계속운전에 있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당해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8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적격 또한 인정되지만,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별첨 '8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월성1호기 부지로부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80km 이내 거주하는 원고들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은 월성1호기 부지로부터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주민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80km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이하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원고들'이라고만 하면, 이는 앞서 본 80km 이내 거주하는 원고들만을 의미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 1) 법정 신청서류 미제출 및 위원회 심의 부존재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운영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운영변경허가신청서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제37조 제1, 2항에서 정한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심의하였을 뿐, 변경허가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출되거나 심의되지 않았다. 게다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이 사건 의결 이전에 이미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운영변경허가가 이루어져, 위원회 회의에서는 계속운전허가 전·후의 허가사항 변경내용 전체를 심의·의결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운영변경허가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 2) 위원회 위원 구성의 흠

피고의 위원장인 이○○은 2012. 12.경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이 만든 협의체인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의 위원인 조○○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2012. 12.경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따라서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결격자인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 3)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상의 흠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계속운전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미리 제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처럼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5시간이 넘게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이 강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 4)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의 오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통상의 안전성평가에서와 달리,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서는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

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월성1호기의 건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 제정되어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캐나다 기술기준인 R-7(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을 위한 요건), R-8(캔두형 원전의 원자로 정지계통을 위한 요건), R-9(캔두형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위한 요건)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지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월성2호기에는 설치된 여러 시설(냉각재 상실사고 후 계기용 공기설비, 원자로건물 총누설감시계통, 사용후핵연료 방출조 수문, 복수의 비상냉각열교환기, 주증기격리밸브, 관통부 격리밸브)이 월성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월성1호기의 부지가 서로 다른 지질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지진이나 지반침하 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지진의 발생가능성, 예상 진도, 주변 단층대 등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과소평가하였다. 이처럼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에 오류가 있어 계속운전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속운전을 허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 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지 주민 의견수렴절차 누락

2015. 1. 20.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다섯 번째 주장'이라 한다).

#### 6) 경제성 평가의 오류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오

히려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뿐이므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여섯 번째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신규로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목록<sup>4)</sup>(이하 '7종 허가서류'라 한다)과 그 구체적인 기재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청서에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이하 '비교표'라 한다)' 및 운영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비교표를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피고가 최초 운영허

4)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소정의 원자로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핵연료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지만, 일단 운영허가를 받은 사항<sup>5)</sup>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제출받은 자료에다가 변경될 부분의 비교표를 더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피고가 변경허가신청을 심사할 때 변경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허가사항이 기재된 7종 허가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이를 심사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운영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나 신규로 운영허가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도 또한 같다).

나)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성평가보고서(이하 '통상의 안전성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안전

5)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변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도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영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허가받은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성평가보고서(이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sup>6)</sup>은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에는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및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계속운전의 허가가 운영변경허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에 관련된 규정을 변경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부분 쪽에 배치함으로써 체계적 정합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sup>7)</sup> 그러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7종 허가서류의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의 심사기준이 운영변경허가의 심사기준과 같거나 더 강화된 기준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제출·심사로서 운영변경허가의 제출·심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7종 허가서류의 하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유사한 목차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 및 방사선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운영(변경)허가기준에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지 적용하여야 할 기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아니라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주 3) 참조  
7) 유럽과 일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 추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발전소 일반자료, 기술자료, 운영기술지침서, 환경영향평가가서 등을 제출받아 운영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속운전을 결정한다고 한다(2015. 9. 25.자 피고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참조).

준으로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최신 기술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운영변경허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원안위법 제12조 제5호는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sup>8)</sup>·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신규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만 운영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중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경미하지 않은 변경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여러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고가 그 인·허가권을 소속 직원에게 전결규정의 형태로 위임할 수는 없는 점<sup>9)</sup>,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의 일종인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도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신규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그 심사를 전후하여 운

8)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3. 8. 16.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1호) 제7조 [별표 1] 심의·의결사항 중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운영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9)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서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구 원자력법 시행 당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주요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원안위법이 시행된 후에는 허용될 수 없다.

영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설비교체(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의 핵심설비인 380여 개의 압력관 교체작업이다)가 여러 건 진행되었고<sup>10)</sup>, 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는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변경허가는 위 원자력안전법 및 원안위법이 정한 피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잠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KINS가 작성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을 제16 내지 18호증)가 월성1호기의 설비 교체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기검증, 경년열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sup>11)</sup>, 위 설비교체는 사실상 계속운전을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성○○의 2016. 7. 20.자 증언 녹취록 21면 참조). 그런데 이러한 설비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피고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한수원은 이 사건 신청시 '비교표'라는 제목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영허가증이나 7종 허가서류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표제와 관계없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인 비교표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한수원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을 제 22호증의1)이 비교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은 7종 허가서류의 하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경년열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앞서 본 설비교체를 위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증인 성○○의 2016. 7. 20.자 증언 녹취록 23면 참조),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의결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10) 피고가 2016. 8. 31.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운영변경허가신청 및 승인 알림문서 목록' 참조

11) 피고에 따르면 2009.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자로 내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일차냉각수공급자관, 제어용전산기 등 9,000여 건의 대규모 설비개선이 있었다고 한다.

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은 계속운전의 허가를 위하여 심의·의결시 요구되는 비교표라고 볼 수 없다.

⑤ 위원회가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사항을 의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령상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심사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비교체 등 운영변경허가사항은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⑥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 운영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전후하여 한수원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KINS 내지 피고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설비교체를 먼저 진행한다면, 한수원에게는 계속운전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설비교체를 협의한 KINS나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

##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안위법 제1조는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면서도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제8조에서 신분보장을, 제9조에서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법의 입법 취지는 구 원자력법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소속되어 각종 인·허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안위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 5호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자력 규제기관인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규제 대상인 원자력이용자에 대하여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서 본 원안위법의 입법 취지나 다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게다가 원자력이용자의 장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도 없다.

다) 그런데 갑 제15(1, 2, 7면), 45 내지 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원장이○○은 2012. 12. 한수원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갑 제46호증에 의하면 한수원으로부터 자문료나 회의비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원 조○○은 2010. 12.부터 2011. 11.까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신규원전을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부지평가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또 위 조○○은 2012. 12.경 한수원 소속 사업자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처럼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사내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조○○은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이 사건 의결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 게다가 갑 제16호증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조○○은 계속운전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6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성1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피고 위원들에게 제공되었고, 김○○ 위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KINS는 답변의 충실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모두 답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위원회 회의 당일이 되어서야 월성2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공되어 위원들이 월성1호기와 월성2호기를 충분하게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들에게 미리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월성2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공되었다면 위원회에서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끝에 일부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어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의 안전성평가를 할 때 '안전성 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신규운영허가를 할 때 정해진 설계수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규운영허가를 할 당시의 기술기준이 아닌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앞두고 있는 원전은 계통·기기·구조물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강화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KINS는 피고가 제정한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5호, 이하 '계속운전 지침'이라 한다)'에 캔두형 원전의 수출국인 캐나다 규제기관의 규정 R-7(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을 위한 요건), R-8(캔두형 원전의 원자로 정지계통을 위한 요건), R-9(캔두형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위한 요건)(이하 R-7, R-8, R-9를 통틀어 'R-7

등'이라 한다)가 기술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면서 R-7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증인 성○○(KINS의 심사단장으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의 2016. 7. 20.자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KINS는 당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운전지침에서 기술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기술기준 G-360(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은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신 기술기준과의 격차분석(Gap Analysis) 및 격차의 중대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R-7 등과 같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다) R-7 등은 월성1호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인 1991년경 제정되어 그 후 국내에 건설된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기술기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R-7 등이 월성1호기에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R-7 등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서 말하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해당하고, KINS는 R-7 등을 적용하여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KINS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심사한 결과 R-7 등을 적용할 경우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KINS가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응하여 R-7 등을 적용할 경우

안전성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답변한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한정된 답변이어서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또 R-7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충분히 비교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KINS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에 R-7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월성1호기는 월성2호기에 설치된 여러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지진이나 지반침하 등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에도 오류가 있어,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R-7 등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안전시설별 구체적 주장이나 지진 등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월성1호기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피고가 R-7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1. 20.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 전문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부칙(2015. 1. 20.)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일은 제출일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은 2012. 11. 20.이고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는 2009. 12. 30. 제출되었는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2009. 12. 30.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다) 따라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작성·제출할 당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2015. 1. 20. 개정되어 그 날로부터 시행된 위 원자력안전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자력안전법 부칙(2015. 1. 20.) 제3조의 취지도,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한 시기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일인 2015. 1. 20. 이후인 경우에만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월성1호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안위법 제2조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함으로써 원안위법의 입법 목적 즉 '원자력의 생산과 이

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국내 전력수급의 문제나 계속운전의 경제성 등은 피고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피고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기타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의결 당시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위법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지 서로 밀집하여 배치된 다수 원전의 동시사고가 반영되지 아니한 흠,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주장들은 민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았고, 2017. 1. 4.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철회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8)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개재된 위 흠이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첫 번째 흠은 원자력안전법령상 중요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자력안전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체계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절차를 통하여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 규정의 해석이 복잡하고, 피고 소속 직원은 피고가 제정한 위임전결 규정



에 따라 설비교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결 자체는 외관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흠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조○○은 원안위법에 따른 임명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 사건 의결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상당 기간 위원으로 재직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세 번째 흠의 경우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부터 취소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 세 가지 흠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4. 결론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별첨 '80km에서 250km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km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국

판사 이정훈

별지

## 관계 법령

### ▣ 행정소송법

####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구 원자력안전법(2015. 1. 20.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0조(운영허가)

-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허가기준)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원자력안전법**

###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③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부칙(2015. 1.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 ▣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33조(운영허가 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 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 ▣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4. 경년열화(경년열화: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9.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 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2014. 11. 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도래한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2015. 7. 21. 총리령 제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운전(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계속운전을 말하다. 이하 같다)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계통·기기·구조물의 기  
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가. 수명평가 대상인 계통·기기·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 나.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 다. 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가. 부지특성의 변화
  - 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 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 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 마. 환경감시계획.

####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  
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계통·기기·구조물의 안전기  
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  
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  
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제8조(신분보장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애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2014. 6. 18.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53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전결사항)**

-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급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별표] 중

주기적안전성평가 : 원자력안전과장 전결

원자력시설 운영변경 허가 : 원자력안전과장 전결

노후원전 안전성평가 중 계속운전 허용여부 결정 : 위원장 전결

노후원전 안전성평가 중 계속운전 안전성심사 결과 검토 : 안전정책국장 전결

## ▣ 구 원자력법[2011. 7. 25.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0911호) 제정으로 폐지]

### 제5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의2(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애의 방어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 ▣ 구 원자력법 시행령[2011. 10. 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48호) 제정으로 폐지]

### 제22조(안전위원회의 심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전에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3조(운영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끝.

